



창원
도시

City of Changwon
Changwon & Gyeongju area
City of Education
City of Environment
City of Culture
City of Sports
City of International Exchange
City of Information
City of Future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일하는 청소년 을 위한 상담사례집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 유용한 취업 / 창업 / 생활정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
리하는
청소년
을 위한
상담사례집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 유용한 취업 / 창업 / 생활정보

CONTENTS

PROLOGUE	발간사	2
INTRODUCTION	부천시청노사민정협의회	8
	함께 하는 기관들	10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GUIDE	부천시청 청소년 노동실태	14
	청소년 노동상담사례 FAQ	16
	청소년 노동보호 근로기준법	27
INFORMATION	정보 길라잡이	40
	-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 청년 주거/생활 지원사업	
	- 청년 건강/문화/여가 지원사업	

PROLOGUE

발간사

우리사회의 청소년 노동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늘어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현장에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대책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부터 장년층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노동 현장에서 무시와 차별을 견디며 일하고 있고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슈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상담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INTRODUCTION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함께 하는 기관들

- 청소년법률지원센터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한국노총부천상담소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당연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노사민정 각 경제주체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협의의 도출과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대표적인 지역 협의기구입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미래 노동세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하부 협의체인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 참여기관들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부천상담소 등과 협업하여 노동인권 역사기행,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청소년노동인권 토론회 등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4층
TEL : 032-322-3814~5 FAX : 032-611-3813
www.bcnsj.org

2018년 부천노사민정 노동인권교육지원 사업

노동인권 역사기행

9/28

- 부천실고 재학생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11/20

- 주재발표 및 당사자토론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11~12월

- 수능 마친 고3 107개 학급



함께 하는 기관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부천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법률지원기관입니다.

주요사업



- 형사사건 및 보호사건 변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 민사사건 변호
- 청소년 관련 법률 상담, 법률교육



- 생계지원
- 정책연구
- 청소년 성장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이용방법

이용대상 : 9~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시간 : 월~금 9:00~18:00
이용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비 용 : 무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4층
TEL : 032-655-4620 **FAX** : 032-655-2252
youthlawfare.or.kr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 정책대안 생산,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청소년 알바 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01.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법률지원
02.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03. 부천시 공공부문 업체 노동관계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
04. 노동인권/노동관계법률 교육
05.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활동 지원
06.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사업

부천시 안심알바센터

이용대상 : 청년, 청소년 누구나
지원내용 : 노동법률 무료상담/법률지원
이용방법 : 전화 070-4236-8279
및 카카오톡 @안심알바센터/albabc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301번길 5 부천시립북부도서관3층
TEL : 032-679-8279 **FAX** : 032-948-8279
www.bclabor.org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 노동OK는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노동법률 상담
02. 노동교육 사업
03. 지역고용거버넌스 사업
04. 컨설팅 사업
05. 노동자료 및 정보 제공
06. 합리적 노사관계 상담

[illegibl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TEL : 032-6653-7051~2 FAX : 032-656-6282
www.nodong.or.kr

12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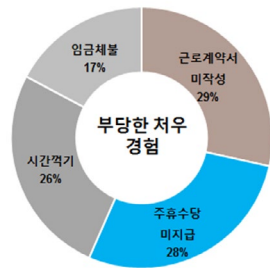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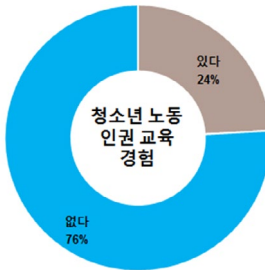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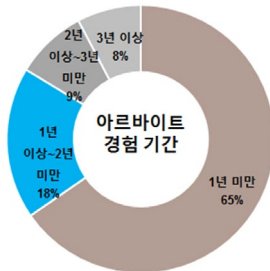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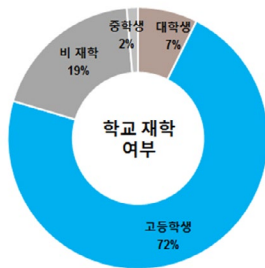


GUIDE

부천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청소년 노동상담사례 FAQ
청소년 노동보호 근로기준법

부천시 청소년 노동실태

본 자료는 2018년 부천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11.20)에서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부천시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2016,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외)

15세 ~ 19세 구인 일자리 선호도 상위 3곳

음식점 17,436건 > 편의점 19,816건 > 패스트푸드 6,806건

20세 ~ 24세 구인 일자리 선호도 상위 3곳

커피전문점 161,282건 > 사무보조 190,399건 > 음식점 154,627건

30세 ~ 34세 구인 일자리 선호도 상위 3곳

사무보조 153,358건 > 커피전문점 84,915건 > 편의점 41,584건

자료출처 : 2018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김종진, 2018)

Q.

고2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업주(아빠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비를 달라고 했더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셔야 준다고 합니다.

A.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부모님이 대리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의 지급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제43조 (임금 지급)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은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Q.

원래 일요일에만 일하다가 토요일 5시간, 일요일 1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4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주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알아두면 좋아요!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계산법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한도) ÷ 5일 × 시급

Q. _____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거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_____
근로계약은 구두(말)로 해도 똑같은 효력이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입증 곤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채용공고문/월급봉투/사장님 명함 등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Q. _____
웨딩홀에서 주말마다 일하는데
점심식사도 5~10분안에 먹으라고
하며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A. _____
4시간에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입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짧은 시간으로 분할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계산법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한도) ÷ 5일 × 시급

Q.

사장님께 다다음주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래요. 안 그러면 이번 달 월급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A.

사업주에게 그만 두는 날짜를 문서로(사직서) 확인시키되 **사업주는 나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그만두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구해놓는 것은 퇴직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월급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별개임을 분명히 하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Q.

취폐에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주말에만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말에도 일한 경우에도 이들을 합쳐서(주당) 15시간을 넘게 일해 왔으면 퇴직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이를 잘 챙겨놓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법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피자집에서 알바를 할 때 피자를 꺼내다 화덕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는 않고 그냥 퇴근하고 며칠 쉬다 나오라고 합니다.

A.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산재보상이라 하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제도)**
 사업주가 산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 돈으로 주는 경우(공상처리) **산재 은폐로 형사처벌**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시행일 2018.1.1]]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

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

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1]]

Q. _____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사장님이 자주 끈적거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A. _____

사장님 행동이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혹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접촉 없이 야한 농담이나 몸매에 대한 평가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 정의

- 사업주·상급자 또는 다른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 생물학적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는 금지된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노동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는 금지된다.

-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대응방안

- 직장 내에서 혹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즉각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대부분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알아야 쓸 수 있는 청소년 노동 보호 근로기준법

0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긴 중요한 문서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한 경우 대응하기 어려움.

-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 작성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 작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명시내용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청소년(연소자) 보호규정

만 15세부터,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는 아르바이트할 업체의 사장님, 부모님,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소자 고용시 필요한 서류(사업장 비치 서류)

- 친권자(보호자,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제한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시행령 제40조)

01. 고압, 잠수작업
02. 운전, 조종면허 취득 제한업무
03.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직종·업종*
04. 교도소 정신병원 업무
05. 소각 도살 업무
06. 유류 취급업무(주유 제외)
07. 2-브로모프로판 취급업무
0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고시업무

*청소년(19세 미만자)고용 출입 금지직종이나 업종

[고용·출입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전화방 등

[고용 금지] 숙박업(콘도, 펜션 제외), 이용업(남자청소년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등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의 수준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교섭력의 차이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이를 결정하여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임.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 3년 이내에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노동자들이 알기 쉽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결정해서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년도	시급	월급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04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다.

- 01.** 현금인 돈으로(또는 은행 계좌 입금) => 통화불의 원칙
- 02.** 본인에게 직접 줘야 => 직접불의 원칙
- 03.** 월급날을 정해서 =>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원칙
- 04.**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지각이나 보종금, 손해 배상 등의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단, 세금과 4대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임금채불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장사 안 된다고 팔아서 쓰라고 물건으로 주는 것
- ②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
- ③ 12시간을 일했는데 시간당 3,000원씩 36,000원을 주는 것
- ④ 고깃집에서 일했는데, 남은 고기를 현금대신 주는 것

05 근로시간

-연소자의 건강보호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제한

-법정 기준 근로시간 : (18세 미만) 1일 7시간 / 1주 35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1일1시간/1주5시간 한도 연장가능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 : 다음 작업을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업무 복귀해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

4시간 ▶ 30분 이상

8시간 ▶ 1시간 이상

시간외근로 :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면

- 시간외근로수당 50%

휴일근로 :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면

- 휴일근로수당 50%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 야간근로수당 50%

(※18세 미만은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06 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반드시 일요일 아닐 수 있다.
- 주5일제로 토,일 보통 쉬는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놓았을 경우, 토요일은 쉬더라도 무급휴일(휴무일)에 해당

주휴수당

- 주휴일은 1일치 임금을 받고 쉬는 것을 의미, 그 1일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나의 시간당 임금

07 퇴직금

알바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도 많아진다.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08 부당해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구두나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30일전에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주거나 30일치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09 4대보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는데 사업장 규모, 월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급의 8%정도가 노동자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0 권리 침해 시 구제방법 및 절차

임금체불의 경우

-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에 신고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산업재해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진정

폭언·폭행 등 부당사례의 경우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알바달력을 꼼꼼히 기록하자

알바달력 예시

● 알바달력(예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1	2	3	4	5	6	7	8	9	10	11
2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1	2	3	4	5	6	7	8	9	10	11
3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4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4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	1	2	3	4	5	6	7	8	9	10	11
5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1	2	3	4	5	6	7	8	9	10	11
6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	1	2	3	4	5	6	7	8	9	10	11
7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1	2	3	4	5	6	7	8	9	10	11
8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8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9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월	1	2	3	4	5	6	7	8	9	10	11
10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0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1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월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18년 기준 - 7,530원 / 2019년 기준 - 8,350원)을 적용받습니다.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극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INFORMATION

정보 길라잡이

-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 청년 주거/생활 지원사업
- 청년 건강/문화/여가 지원사업

알아두면 쓸데많은 정보 길라잡이

청년 취·창업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지원내용** **2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적립시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 목돈마련
3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 적립시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 공동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 목돈마련
- 신청방법** www.work.go.kr/youngtomorrow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재)부천산업진흥재단(☎ 070-7094-5469, 5465, 5468)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대상** 청년 구직자 18세~34세
- 지원내용** 진단 및 상담 →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 알선에 이르는 취업의全过程를 통합 제공
참여수당 참여자 1단계 수료시 실비 최대 25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참여시 최대 6개월간 40만원 지원
훈련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지원 최대 200~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시 최대 15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만 해당)
- 신청방법** 부천고용센터 (☎ 320-8900)

청년취업아카데미

- 지원대상** 대학재학생(4년제2~3학년, 2년제 1학년2학기부터), 졸업예정자, 졸업자(만34세 이하 미취업자)
- 지원내용**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전액무료 및 연수 후 취업지원
- 신청방법** www.work.go.kr/youngtomorrow
- 문의** 부천일자리센터(☎ 625-8432~8)

일하는청년 마이스터 통장

- 지원대상**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중소기업 취업 주 36시간 이상 월급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내용** **2년간 월 3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720만원)-선발
- 신청방법** www.work.go.kr/youngtomorrow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 1577-0014)

일하는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내용**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연 최대 12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youth.jobaba.net)
- 문 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1577-0014)

일하는청년 연금

- 지원대상**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월급여 250만원 이하 퇴직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참여자 납부액과 지원액을 1:1 매칭 지원 (1인당 최대 3,60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youth.jobaba.net)
- 문 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1577-0014)

청년을 위한 취업 솔루션 꿈날개

- 컨텐츠** 온라인교육/취업상담/이력서클리닉/모의면접스킬업/진단센터/직무적성검사(대기업 모의테스트/공사,공기업 모의테스트/대기업 종합적성검사/중견기업 종합적성검사), 기업정보(시사상식자료집/기업별 직무정보/중소기업정보)
- 웹사이트** www.dream.go.kr/university

부천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청년구직자 19세~34세
- 지원내용** - OT 및 자기탐색 / MBTI 검사 해석 및 진로상담
- 채용동향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
- 진로상담 및 입사지원서 첨삭
- 면접전략 및 모의면접 / 면접컨설팅
- 커리어로드맵 작성, 면접컨설팅 / 채용정보 탐색 등
- 신청방법** 유선 / 방문 gyeonggi.work.go.kr/bucheon/main.do
- 문 의** 부천일자리센터 (☎625-8432~8)

부천일자리카페 운영

- 지원대상** 청년구직자 19세~34세
- 지원내용** - 직무적성검사, 인사담당자 직무멘토링,
- 취업지원1:1멘토링제, 취업스터디 등
- 신청방법** 유선 / 방문
이용시간 : 평일 10:00~20:00
- 문 의** 부천일자리카페(☎625-8419, 8439)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북부역 1층



1인 미디어 창작 크리에이터 in 부천

지원대상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희망 청년 구직자
(만 19~35세)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이론 및 제작기술 교육
- 실무경험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및 특강·견학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cmc.kr)

문의 시민미디어센터(☎032-329-8150)
페이스북 : @bcmc8150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지원대상 전문학사 및 학사 졸업예정자 대상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설**
· 지능형서비스로봇 자율주행시스템
· IoT 기반 지능제어

신청방법 팀프로젝트(PBL) 8개과제 운영

문의 홈페이지 www.bizbc.or.kr
(재)부천산업진흥재단(☎070-7094-5461)



청소년 협업공간 운영

지원대상 만19세~34세이하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지원내용 **교육지원**
목공, 사진, 캘리그라피, 가죽, 의류, 바리스타, 창업관련
행정 및 예산교육 등

활동내용

- 분야별 시제품 제작과 판매 지원(인큐베이팅)
- 공동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과 판매
-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개별 창업시 지원가능 기관 연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sosayouth.or.kr

문의 소사청소년수련관 (☎ 032-344-0720)

청춘기부카페 운영

지원대상 만17세~34세이하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지원내용 **교육**
바리스타 기초·심화과정 교육, 회계 및 행정교육

지원 및 활동

- 청소년 및 청년 창업지원금 연계
- 청소년기부카페 자율운영
-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유선 / 방문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sosayouth.or.kr

문의 소사청소년수련관 (☎ 032-344-0720)

청년 주거/생활 지원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2017.12.1.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혹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청년 (34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39세)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1.2%금리 최대 2년 용자(1회 연장시 최장4년)
신청방법	은행방문
문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FP/FP05/FP050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만19세~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2.3%~2.7% 금리 최대 2년 용자(4회 연장 최장10년)
신청방법	은행방문
문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FP/FP05/FP0502

행복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지원내용	대상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www.lh.or.kr
문의	LH공사(☎ 1600-1004)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행복주택공식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청년우대청약통장

지원대상	만19세~29세이하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방법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 등 방문신청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의	각 수탁은행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사정 등으로 원치 않는 퇴사 한 시민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240일간 평균 임금의 50% 지급
신청방법	퇴직후 신분증 지참후 고용센터 방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15세이상 구직자 청년, 대학졸업 예정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만원내에서 실훈련비의 20%~95%지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www.work.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경기도 대학생 이자지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받은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gg.go.kr)
문 의	부천고용센터 www.work.go.kr/bucheon/main.do

청년 건강/문화/여가 지원사업

희망플랜 “DLive(Drive+Live)”

지원대상	만19세~29세
지원내용	심리상담 · 소그룹형성 심리상담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 종합심리검사 · 인문학강좌 및 인성교육코칭 프로그램 교육·학업지원 · 체험학습, 교재, 학습, 전문학원지원 · 예체능지원(1:1레슨, 재료및교구지원) 진로·진학지원프로그램 · 직업훈련(자격증취득비지원, 응시료지원, 인턴활동연계, 취업 및 창업교육프로그램 등) · 직업연계(취업성공패키지연계, 심화청년인턴십, 직업인 만남 프로그램 등) · 잡카페운영(진로활동, 상담, 문화공간 사용) 사례관리 · 동아리프로그램, 진로활동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유선/방문 visionplan.or.kr
문 의	희망플랜 춘의센터(☎ 032-653-61314)

제1 인생학교

지원대상	만19세~39세
지원내용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습/활동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여행지도 만들기 · 청년의 모양을 빛다



- 노동인권배움터 십사일반
- 혼차움서예
- 청년주도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신청방법 유선/방문
<https://blog.naver.com/justly68>

문의 부천시평생학습센터(☎ 032-625-8473)

청년예술가S

지원대상 만19세~39세 청년예술가

지원내용 창작 활동에 필요한 창작지원금지원
 · 청년예술가 1인당 3,000,000원(시상금 형태로 지원)

문화예술전문가 매칭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관련 법(저작권, 작품 판매 등)
- 문화수용력 향상 교육(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등)
- 기타 직무향상 교육(PT, 기획서 작성, 정산교육 등)

예술가-예술가, 예술가-전문가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10월달 집약적 실연회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 전시 기회 제공

신청방법 2~3월 홈페이지 공고 www.bcf.or.kr

문의 부천문화재단(☎ 032-320-6362)

버스킹 페스티벌

지원대상 청년 버스커 누구나

지원내용 부천역 마루광장 및 심곡시민의 강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신청방법 3~4월 cafe.daum.net/buskingbucheo

문의 문화예술과(☎ 032-625-3118)

3355 교육지원

지원대상 만19세~만24세

지원내용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4회~12회까지 교육강좌 지원(강사)
 운영일시 : 화~일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kumayouth.or.kr)

문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032-682-1886)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person from the chest down, wearing a blue long-sleeved shirt and a grey apron. The person's hands are visible at the bottom right, with fingers slightly curled.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일하는 청소년

을 위한
상담사례집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